

부산지방법원 2018. 11. 23 선고 2017가단333042 판결 [구상금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고 1. 주식회사 A

2. B

3. C

4. D

변론 종결 2018. 7. 13. (피고 1, 2, 3에 대하여)

2018. 10. 19. (피고 4에 대하여)

판결 선고 2018. 11. 23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주식회사 A, B은 연대하여 10,187,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9. 28.부터 2017. 10. 27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2017. 12. 26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2018. 1. 5.까지는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

나. 피고 주식회사 A, B, C는 연대하여 109,892,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10. 21.부터 2017. 11. 19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2018. 1. 18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2.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, B,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,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,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6. 20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7. 8. 10.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,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7. 8. 30. 접수 제789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

이 유

1.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 및 피고 B,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, 원고와 피고 회사 및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9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.

나. 그렇다면, 구상금으로서 원고에게, ① 피고 회사 및 피고 B은 연대하여 대위변제금 10,187,493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7. 9. 28.부터 2017. 10. 27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2017. 12. 26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8. 1. 5.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이자를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, ② 피고 회사 및 피고 B, C는 연대하여 대위변제금 109,892,348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7. 10. 21.부터 2017. 11. 19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2018. 1. 18.까지는 연 9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이자를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%의 비율로

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.1)

2.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기초사실

- 1) 피고 B은 2017. 6. 20. 피고 D으로부터 100,000,000원을 이자 월 1%, 변제기 2017. 12. 31.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,000,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D 앞으로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 한다)를 마쳐 주었다.
- 2) 그 후 피고 B은 2017. 8. 10.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50,000,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면서, ① 계약금 100,000,000원은 피고 B이 피고 D에게 위 차용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고, ② 잔금 350,000,000원은 2017. 8. 31. 지급하되, 그중 300,000,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경양돈협동조합 앞으로 설정된 2012. 11. 29.자 근저당권(채권최고액 312,000,000원)의 피담보채무 260,000,000원 및 2016. 11. 3.자 근저당권(채권최고액 48,000,000원)의 피담보채무 40,000,000원 합계 300,000,000원의 채무를 피고 D이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.
- 3) 이에 따라 피고 D은 2017. 8. 30. 피고 B에게 잔금 50,000,000원을 지급하였고, 이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 D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가 마쳐졌으며, 그 결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혼동으로 말소되었다.
- 4) 이후 피고 D은 현재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인수하기로 한 부경양돈협동조합에 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있다.
- 5) 한편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.

가) 적극재산

(1) 거래가액 450,000,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

(2) 2017. 8. 18.자 거래가액 91,600,000원 상당의 상주시 E 토지 및 F 토지, 2017. 8. 25.자 거래가액 60,000,000원 상당의 상주시 G 토지 및 건물, 2017. 8. 18.자 거래가액 65,400,000원 상당의 상주시 H 토지(이하 통틀어 '사건외 부동산'이라 한다)

나) 소극재산

(1)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경양돈협동조합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300,000,000원

(2) 사건외 부동산에 관하여 부경양돈협동조합 앞으로 설정된 2013. 11. 6.자 근저당권(채권최고액 186,000,000원)의 피담보채무 155,295,306원(이는 2018. 8. 25. 상환되었다)

(3)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전구상금채무 118,217,671원(= 10,187,493원 + 108,030,178원)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3, 8, 10, 11호증, 을라 제1, 2, 3, 5 내지 11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부경양돈협동조합 물상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당사자의 주장

1) 원고의 주장 가)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은 667,000,000원(= 450,000,000원 + 91,600,000원 + 60,000,000원 + 65,400,000원),

소극재산은 573,512,977원(= 300,000,000원 + 155,295,306원 + 118,217,671원)

상당이었는데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100,000,000원 증가하여

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,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150,000,000원(= 매매대금

450,000,000원 -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0,000,000원)의 공동담보가 감소됨으로써 채무초과

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등 일반 채권자에

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, 피고 B은 당시 사해의사가 있었으며,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

D은 이에 관하여 악의로 추정된다.

나) 따라서 피고 B,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

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
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)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은, 피고 B으로부터 그의 유일한 재산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B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.

다. 판단

무엇보다도 위 인정사실 및 올라 제4호증의 기재, 증인 I의 증언, 이 법원의 NH농협은행,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450,000,000원 상당으로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B에게 대여한 100,000,000원과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부경양돈협동조합의 피담보채권 300,000,000원의 합계액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, ②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에 맞는 금액에 매수하여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살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인수하기로 한 부경양돈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,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은 667,000,000원, 소극재산은 573,512,977원 상당으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, 피고 B의 재정상황을 면밀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가 된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, ④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도 피고 D과 피고 B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는 서로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은 피고 D이 피고 B의 재정상황을 면밀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가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등 피고 B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피고 D을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B,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고, 원고의 피고 D에 대한

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성률

별지

1) 원고는 피고 회사 및 피고 B, C를 상대로 대위변제금 109,892,348원에 대하여 2017. 11. 20.부터 2018. 1. 18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,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이 2018. 1. 5.이므로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기로 한다.